

제295회 거창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6.8.27.)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 제 기 업 과	1
2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제 기 업 과	11
3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17
4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살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과	26
5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35
6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53
7	거창군 아람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58
8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 화 예 술 과	64
9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 화 예 술 과	68
10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 략 담 당 관	73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 구 교 육 과	86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6. 8. 14.

나. 발 의 자: 박수자 의원 대표발의(11명)

(박수자, 표주숙, 하병오, 김미영, 신중양, 구교천,
강우용, 김홍섭, 신재화, 이홍희, 백종숙)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다.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등(안 제6조)
- 라.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마. 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전원개발촉진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경제기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08. 03. ~ 08. 11.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및 제정의 타당성

- 해당 제정 조례안은 거창양수발전소 최종 유치를 위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민간 유치 활동을 적법하게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 국책사업 유치의 성패가 주민 설득과 합의에 달려있는 만큼, 민간 유치위원회의 주민 설명회·홍보 등 유치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조치로 판단됨.

나. 주요 검토사항

- 거창군은 2024년 8월부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읍면 순회 군민 결의대회, 거리행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해 3월 ‘거창 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섬.

- 덧붙여, 한국남부발전(주)과는 지난해 1월, 양수발전 유치 1차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7월, 2차 업무협약을 가졌으며, 양기관은 △양수발전소의 유치와 성공적인 건설 △이주민 지원사업 △양수발전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상생 발전 △지역 지원사업 공동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해당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 유치위원회의 주민 홍보·의견 수렴 등 필수 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적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청사진을 미리 제시하여 주민 설득과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군은 현 시점에서 민간 유치위원회의 주민 소통 및 공감대 형성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유치 확정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과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거창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주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절한 제도적 기반이므로 해당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거창양수발전소 유치 및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미 첨 부 사 유 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4조(지원사업 등)
- 제6조(유치위원회 활동 지원 등)
- 제16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은 5천만원 미만 소요예정
- 그 외 사업은 거창양수발전소 유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예산안 마련 예정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지역특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지방 레도사업의 경영
 -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

- 공교육 · 체육 ·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시 · 도유산의 지정 · 등록 · 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 · 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 · 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 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 · 행사 · 대회 유치 · 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 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전원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
 -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3. 30., 2020. 2. 4., 2021. 6. 15.> [전문개정 2007. 12. 27.]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8. 5., 2021. 2. 9.>

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대면회의에 한정한다)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수집 또는 안전검토 등 심사를 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서면보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나 거창군의회 의원인 위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장 물품이나 안전설비 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 신설함(안 제4조)
- 나. 협력체계 구축 신설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
 -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 나. 예산조치: 도비 지원 시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7. 21.~8.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검토내용

- 지난해 12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58만 6천여 명이며, 이 중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413만 4천여 명으로 전체의 74%에 해당됨.
- 또한, 여성 자영업자는 170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해 1인 중심의 소규모 형태로 재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구조변화로 인해 단독 또는 야간 영업 시간에 절도, 사기,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음.

나. 주요 쟁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황 조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사업장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지원 대상을 보면 ‘소상공인’ 전체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 ☞ 조문상 대상을 확대 규정한 사유 및 지원 대상 선정 시 형평성·특혜 시비 방지 대책 등
- 따라서 향후 집행 과정에서 위임 범위 초과 및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우선순위 및 자격 요건에 대한 세부 집행 지침을 엄격히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지원방식은 '물품 장비 또는 경비 지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안전물품 지급' 및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개정 조례안은 직접 현금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 ☞ '경비 지원'의 구체적 집행 형태 확인.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제 사업 집행 시에는 현금 지원을 지양하고, 상위법 취지에 맞게 ‘안전물품 지급 및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 지원’의 형태로 한정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덧붙여, 현행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범죄예방의 경우 전문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제11조를 신설하여 거창경찰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종합심사 및 처리 방향

○ 법률의 하위법령 위임범위는 법률이 특정한 사항에 대해 규정을 위임하고, 그 규정을 받아들이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개정 조례안은 법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거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또는 경비 지원

나. 관련조문: 소상공인 지원(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나.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시 연계하여 사업시행 예정

1) 여성 및 1인 소상공인부터 지원하고 점차 지원대상 확대

2) 거창군 소상공인 수

가) 9,684명

나)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기준

3)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작성자 경제기업과장 김인수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8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2조의9(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폭력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의 지급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자격을 확대·개선하여 거창군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신고대상자 확대·개선함(안 제1조·제2조·제7조)
 - 1) (현행) 군 소속 공무원 ⇒ (추가) 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나. 신고자 자격 확대·개선함(안 제3조)
 - 1) (현행) 공무원 및 군민 ⇒ (확대) 누구든지
- 다. 법령 재기재, 인용 문구 등 정비함(안 제3조·제11조·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9-318호)

나. 예산조치: 2026년 예산 6,000천원 확보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7. 21.~8.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부조리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 자격 제한(지역주민)을 폐지하도록 권고(의결 제2019-318호)하였음.

○ 해당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신고 대상 및 신고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거창군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적 근거의 적정성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5조·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조례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의 범위에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는 그 직원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 제1조·제2조에서 신고 대상을 군 소속 공무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령 및 권익위 권고사항에 부합함.
- 안 제3조에서는 신고자 자격을 종전 ‘공무원 및 군민’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는 것은 거주지·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제보 문호를 넓히는 조치로 타당함.

다. 주요 쟁점 검토

- 안 제3조의 신고방법의 경우 ‘그 밖에 편리한 방법’은 SNS, 전화·구두 제보 등 신고자 개인의 편의에 의존하는 주관적 표현으로, 기록 보존이 불가능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정식 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우려가 있음.
- 이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관적 용어를 배제하고, 팩스·직통신고채널 등 행정 수용이 가능한 기타 수단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상위 법령에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최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거창군 최근 3년간 지급실적이 0건인 점을 고려하여 2026년 예산은 600만원(민간인 300만원, 공무원 300만원)으로 편성함. 향후 대형 신고 발생 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

- 해당 개정 조례안은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가 발생함에도 부조리 신고 대상에는 미포함되어 있던 것을 확대하고, 신고자 자격을 누구든지로 완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됨.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신고대상 확대: 군소속 공무원 + 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재)거창군장학회, (재)거창문화
재단, 거창군 체육회]

- 2) 포상금 지급

나. 관련조문: 정의(안 제2조), 포상금 지급(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나. 2026년 예산 기준

- 1) 부조리신고 민간인 보상금: 3,000천원

- 2) 부조리신고 공무원 포상금: 3,000천원

다. 2025년~2026년 현재까지 지급 0건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의안번호 제2019-318호)

-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IV. 개선방안

1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

○ 부조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보조금 지원기관, 임원 선임 위촉 선임 동의 추천 등을 하는 기관 중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 임직원 포함

※ 공직유관단체뿐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보조금 지원 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범위 축소 불필요

3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신고자 거주지를 제한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장수군이 규정 개선 대상 거주지 제한 없는 규정 예시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4조(신고 및 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주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패행위 등의 신고)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시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 현행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별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조례 제2조제2호 '나'목 관련 신고	· 추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이내
조례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⑨ (생략)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재난특별활동비를 신설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3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 나. 예산조치: 2027년 도비 본예산 반영 결과에 따라 군비 확보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6. 7. 20.~8. 1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주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이장에게 경상남도 광역 사업인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제4조(실비 보상) 중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 규정 정비, 제6조(사기진작)의 제목을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으로 변경하고, '복지도우미 활동비(월 1회)'와 '재난특별활동비(분기 1회, 회당 10만원)'를 지원 항목으로 신설(안 제6조제7호·제8호) 하였음.

나. 법적 근거 및 적정성 검토

- 현 정부에서는 특별재난활동비 명목으로 이장들에게 특별 수당을 국비로 지급할 계획이지만 추진된 사항은 없음. 현재 전국 이장과 통장수는 10만 여명으로 그간 기본수당은 20만원에서 2020년 30만원, 2024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됐고 전액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세출 예산의 비목 구분과 과목 설정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명확히

위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새로운 예산 비목을 신설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별표 4]에 이장 활동보상금 비목은 기본수당(월 40만원), 상여금(연 200%), 회의수당(회당 2만원) 3가지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음.

- 개인에게 정기 지급되는 금전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301-07)' 외 다른 비목으로는 편성할 수 없으며, 안 제6조(사기진작)로 우회 신설하더라도 행안부 예산과목 설정 취지에 저촉됨.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11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1 일반보상금의 07,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 1. 조례에 따라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읍·면·동의 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제4조에 따른 기준경비에 의함.
- 가. 통장·이장수당
- 1) 통장·이장 수를 지급기준 금액에 따라 계상
- 2)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회의참석수당은 월2회 적용 지급
- 나. 반장보상금: 반장수를 기준액에 따라 편성

-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의 정책적 방침과 재정 협조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이 동시 추진하는 광역 협력 사업으로, 개정의 취지 및 도와 사전 행정 협의 과정은 타당함.

- 하지만 도비 매칭(4:6)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이장에게 집행하는 최종 주체는 거창군으로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 시 비목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거창군 역시 보통교부세 감액 처분을 받게 됨.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현재 우리군 이장은 267명이며 재난특별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연 40만원을 지급할 시 예산 소요액은 10,680만원이고, 매칭 비율 적용 시 도비(40%) 4,272만원, 군비(60%) 6,408만원이 소요됨.

○ 2027년 경상남도 본예산 반영 전 조례가 선행 개정되는 구조이므로, 도비 보조금이 차질 없이 교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개정 조례안은 재난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상남도 재정 지원(도비 40%)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제10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나. 관련조문: 사기진작 등을 위한 지원(안 제6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기간: 2027년 1분기~2031년 4분기

2) 비용: 1인당 분기별 10만원(연간 40만원)

3) 대상: 거창군 이장 267명

4) 경상남도 재원 분담안이 2027년도 당초 예산편성 요구
(2026. 8.) 시 확정 예정

5) 도비:군비 매칭비율을 4:6으로 예정

나. 추계의 결과

(단위: 만원)

구분	1차 연도 (2027년)	2차 연도 (2028년)	3차 연도 (2029년)	4차 연도 (2030년)	5차 연도 (2031년)	합계
총 비용	10,680	10,680	10,680	10,680	10,680	53,400
도비(40%)	4,272	4,272	4,272	4,272	4,272	21,360
군비(60%)	6,408	6,408	6,408	6,408	6,408	32,040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2027년 예산 추계

1. 총예산: 10,680만원

2. 군비: 6,408만원

3. 내역: 이장 267명 × 연 40만원

작성자 행정과장 정미영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 차.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42조(예산의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고려하여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10. 그 밖에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 결과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90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감사 결과, 같은 법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감독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또는 징수하지 못한 수입액 이내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과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 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6. 6. 30.] [행정안전부훈령 제449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경비) 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기준경비는 인구, 조직 등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폐지·통합·분리로 인해 기준경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에 제1항 제1호·제2호의 기준경비를 정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경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 준 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반영·정비하여 거창군의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설치, 기능, 시설을 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입장의 제한, 이용 신청 및 제한, 이용 허가의 취소를 정함(안 제5조~제7조)
- 다. 이용료 기준·감면·반환, 관람료 감경을 정함(안 제8조·제9조, 별표 1·2)
- 라. 예술가족회원제 운영, 위탁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마. 법령위배 등 삭제(현행 제12조, 제14조~제16조, 제22조·제23조)
 - 1) 사용료 특례: 기본 사용료 외에 이용자에게 관람료 수익금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것은 부당수익에 해당-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2)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의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민법」 제750조 등 적용
 - 3) 준용,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제29조 등 재기재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공연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61조
- 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3)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제2020-410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5조·제9조)

5. 검토의견

가. 주요 검토

- 해당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던 부당 수입 추가 징수, 법률상 근거 없는 배상책임 면제 등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센터 운영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제출 되었음.
- 검토 결과, 불합리한 규정 정비 및 법정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대관자의 부담을 해소 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일부 조항에서 재량권 오남용 방지 및 상위 법령 체계 조화를 위한 명확화 작업이 요구됨.

나. 주요 조문별 검토 및 법령검토

○ 개정안 제5조 제4호에 입장 제한기준의 성별영향평가 반영 및 모호성 정비

☞ 법령 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 검토 의견: 제5조제4호에 폭언·성희롱·성폭력 등 행위 요소를 명시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지만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같은 주관적·사전적 추측 기준은 현장 집행 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행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운영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 제3항 제3호 정치적 행사 이용 제한 규정의 유연성 확보

☞ 법령 근거: 「정당법」 제37조(정당의 활동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헌법」 제37조제2항)

☞ 검토 의견: 정치적 행사를 금지하면서 「공직선거법」 상 당원 집회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할 때 단순히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대관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례 규정은 위법·부당할 여지가 크다고 해석하고 있음

☞ 그 이유는 정당의 정당한 정책 발표회, 학술 토론회, 주민과의 공청회 등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정당 활동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데, 이를 모두 '정치적 행사'로 묶어 차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임.

☞ 향후 공익 목적의 행사와 정당한 정당 활동이 부당하게 제약 받지 않도록 신중한 허가 집행이 요구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독소조항 정비 및 법정 감면 반영 등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안 제5조·제6조에 따른 과도한 재량권 남용 및 정치적 활동 제약이 없도록 객관적인 운영 지침 및 유연한 대관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이용료 기준 및 금액 변경, 위탁

나. 관련 조문: 이용료(안 별표 1), 위탁(안 제11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세입의 순감소액 추계 어려움

1) 냉난방시설 이용료 기준변경

가) 1회 70천원 ⇒ 1시간 50천원

나. 위탁료 없음(거창문화재단 출연금 16억3858만원)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련법령 발췌

□ 「공연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87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연자 및 공연예술 작업자의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2. “선전물”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초대권을 말한다.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연장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취소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제처 의견 15-0155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범위는 법령 및 조례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권을 가질 수 있고,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권을 가지며,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략~

따라서, 조례로 꽃바위문화관의 사용허가를 설치 목적인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전시작품 활동에 필요한 전시공간이 아닌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법원 2022추5026

가)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해 공유재산법은 그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고(제6조 제1항), 행정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제22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제20조 제3항). 공유재산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것은 공유재산을 사유화할 경우 사회적 형평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러한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 규정을 둔 취지 등을 종합하면, 행정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규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유재산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결(의안번호 제2020-419호, 의결일 2020. 9. 7.)
의안명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1 불합리한 사용료 징수

- 특정 공연물의 과다 할증 및 수익금 추가 징수
- 공공 문화시설 대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관으로, 수익·장르 구분에 따른 지나친 차등 요금은 부적절
 - 뮤지컬 등 흥행 장르나 영리성 대중공연에 대해 3 ~ 4배 높게 받는 것은 부당 수익 또는 역차별 문제 야기
 - 특정 공연에 할증요금 부과는 관객 입장료 인상 및 행사기획 위축 요인으로 작용해 최종 수혜자인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는 건물 사용허가 경우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
 - ※  국민생각함 설문결과, ‘단일요금제 위주’ 및 ‘특정 대상·장르만 할인·할증제 적용’ 응답자가 전체 75.5%(240명)로 조사됨

<차등요금 및 상업공연 할증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규칙·약관·내규)

기관명	요금 종류	개수	요금 편차
인천문화예술회관(대공연장)	공연, 행사, 뮤지컬, 대중음악	4	1 : 1.3 : 5.5 : 16.6
세종문화회관(대극장)	전통,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대중음악, 방송·영화	6	1 : 1.1 : 1.4 : 2.3 : 2.3 : 4
예술의전당(CJ토월극장)	연극, 오페라, 뮤지컬	3	1 : 1.4 : 2.8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대극장)	공연(영화), 행사, 영리공연	3	1 : 1.2 : 3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다중요금제 현황(대표사례)>

(출처: 기관 조례, 1회당)

일반(평일 오후 기준)		상업성 공연물	
공연	행사	성인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촬영	대중가수콘서트 등
180,000원	234,000원	1,000,000원	3,000,000원

- 기본사용료 이외 대관자의 입장료 판매 수익금 일부를 공공기관이 수익배분 관점에서 추가 징수하는 사례도 있음
 - 이는 대관자에게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 운영자의 부당수익 및 대관자·운영자간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 「국유재산법」 제32조는 통합징수 경우 사용기간 중 사용료가 증감하더라도 추가 징수 또는 반환 금지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근거 규정(대표사례)>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및 납부) ① 문예회관 사용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별표 1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유료 관람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료에 같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 (대극장) 15일 초과하여 공연하는 경우 매회 기본대관료의 30% 할증 적용
- (미술관) 30일 이상 입장권 유료판매 전시 경우 일수 구간별 20%(1-30일), 30%, 50% 할증 적용

※ (증언사례) “특정 지자체 대관 공연은 입장료 수익금 추가 징수가 있어 비용 절약을 위해 검수 담당자와 공모해 입장객 수 조작의 거래비리가 있기도 함”(○○광역시 소재 ○○사 대표, 권익위 실태조사)

2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및 추가 징수 금지
 -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및 기관 특성을 고려해 책정
 -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 편차 최소화로 사용료 징수 투명성 확보 및 역차별 논란 차단
 - 수익배분 관점에서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추가 징수하는 특례 규정을 폐지해 부당수익 및 유착비리 요인 제거
 - 대관 사용료를 관람물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규정, 대관 기간별로 사용료를 할증 적용하는 규정 등 폐지
- ※ <개선안 예시>

현행	개선(예시)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③ 국가 (이하생략)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당해 입장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① -----

- 부가가치세 징수 오류 정비
- 관계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시켜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 정비 및 징수액 반환
 - 이미 세입 처리한 부가가치세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세무관서에서 환급받아 반환 처리(세무관서 문의 → 경정청구 환급 → 대관자 반환)

※ <개선안 참고>

<착오 납부 세금 환급제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이면 경정 청구로 환급이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문화시설의 행정규칙·조례·내규 및 업무 등에 반영

□ 거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다음 각 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3. 보건소 진료비
4. 상하수도요금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매년 문화예술 관람권 4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5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5. 11. 25.>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5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수목원(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6. 국공립 자연휴양림(입장료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7.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8.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현행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로 하며,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3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세미나,회의,교육,행사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운영할 경우 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이 경우 문화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의 직급과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사용시설) 문화센터의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대·소전시실, 야외무대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의상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제7조(사용허가) 문화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의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센터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
2. 제9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 다만 종교기념일에 해당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기념공연은 허용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4.7.30)

1.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2014.7.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사용 허가를 받은 때
5.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0조(사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1/3이상을 사용한 때에는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 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1. 오전 : 09:00 - 13: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② 부대설비 중 냉·난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냉방시설 : 7월 15일부터 8월 25일 까지

2. 난방시설 :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 까지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 납부영수증을 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② 공연 및 상영은 1일 3회 이내로 하고, 초과하였을 때는 별도의 초과 사용료를 가산한다.

제12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해당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만을 징수한다.

② 문화센터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소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 발행 및 관리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소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

④ 판매되지 아니한 입장권과 입장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검사자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 한다.

⑤ 문화센터에서 자체공연을 할 시에는 입장권을 위탁판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읍·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8조(입장의 제한) 소장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만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거나 7세 이하 어린이 동반입장 등 문화센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센터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삭제2014.7.30)

제21조(예술가족회원제 운용) ①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센터에서는 예술가족회원제(이하“회원제”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를 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제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 회비, 기간, 입장료 감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취하다: 어떤 기운으로 정신이 흐려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다.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거창아트갤러리의 수준 높은 소장품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예술진흥 및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나. 기금의 설치, 존속기한,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을 정함(안 제2조~제6조)
- 다.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해촉, 제척·기파·회피를 정함(안 제7조~제9조)
- 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0조~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3조

나. 예산조치: 2027년 예산 3억원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및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3. 18.~4. 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의 타당성

- 해당 제정 조례안은 거창아트갤러리의 소장품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금을 신설하려는 안건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목적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조문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기금을 신설할 때 일반회계 사업과의 중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처리함이 적합한 사업은 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 제3호에 기금의 용도로 '갤러리 전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한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및 당부사항

-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소장품의 장기적·안정적 확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춰 용도를 소장품 구입·수집·보존 및 감정·연구 등으로 엄격히 한정할 필요가 있음.

거창군 거창아트갤러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금 조성 및 용도

나. 관련 조문: 거창아트갤러리기금의 설치(안 제2조),
기금의 재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연도 (2026년)	2차연도 (2027년)	3차연도 (2028년)	4차연도 (2029년)	5차연도 (2030년)
군비(100%)	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가. 상세내역

1) 군 출연금 3억원 × 4년 = 12억원

2)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24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향토문화예술 진흥과 군민화합의 장 역할을 해 온 아림예술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설치된 아림예술제진흥기금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장려와 문화예술도시 위상확립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함(안 제4조)
(현행) 2026년 12월 31일 ⇒ (연장) 2031년 12월 31일
- 나.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순화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기금 5억4290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7. 6.~7. 2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려는 안건임.
- 아림예술제는 1996년 기금 설치 이후 거창군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지역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 및 주민 화합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됨.
- 세부 조문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은 상위 법령상 최대 설정 범위(5년 이내)에 부합하고, 위원 해촉 조문 정비(안 제9조) 및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

나. 관련 조문: 존속 기한(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구분	1차연도 (2027년)	2차연도 (2028년)	3차연도 (2029년)	4차연도 (2030년)	5차연도 (2031년)
기금	542,900	542,900	542,900	542,900	542,900
세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 매년 1천만원 이자수익발생 반영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2026년 기준 기금 5억4290만원

2. 아림예술마당 등 행사 지원: 1천만원

작성자 문화예술과장 강선길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질의제목 : 대전광역시의회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실 - 2002(2017.7.20.)

1. 질의요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지?

2. 의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이하 “대전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대전시조례안”이라 함)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전시조례안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하면서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이 공포한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산정되어 5년을 초과하게 되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조례·규칙의 시행일은 제정·개정된 조례·규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법제처, 2013, p. 201. 참조). 대전시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현행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의 효과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시점이 대전시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전시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로 규정하면서, 그 개정조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포·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은 그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 전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과 같다고 볼 것이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한 취지는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기금 근거의 효력을 잃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은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규정의 형태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7. 5. 18. 의견제시 17-0101 참조), 만약 대전시조례안 부칙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대전시조례가 사실상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된 법령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경우, 그 개정조례안의 부칙에서 시행일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날을 선택하여 공포·시행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거창박물관의 무료관람, 박물관자료의 이용, 시설의 대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박물관의 관람 및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향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위치, 용어를 정비함(안 제1조~제3조)
- 나. 관람료, 이용료, 대관료가 무료임을 명시함(안 제4조의2)
- 다. 박물관자료의 이용을 정함(안 제4조의3)
- 라. 서식이나 업무절차 등을 규칙으로 위임(안 제6조·제7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 마. 입장제한 사유 추가함(안 제8조)
- 바. 시설의 대관, 대관의 제한·신청을 정함(안 제11조~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제12조·제2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7. 14.~8. 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안 제8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의 타당성

-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람료·이용료·대관료의 무료화 명시, 박물관자료 이용 및 시설 대관 기준 신설, 서식의 규칙 위임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인 개정 취지는 타당함.

나. 세부 조문별 검토 및 법령검토

- 안 제8조 제6호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람”과 제7호의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사전적·주관적 추측 기준으로서 현장 집행 시 과도한 재량권 남용 및 관람객과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객관적 행위' 중심으로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는 박물관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학술 및 문화예술행사 등에 대한 시설 대관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시설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실제 대관 결정은 대관을 신청하는 민원인(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대관의 신청·승인 절차 및 심사 기준을 세부 지침이나 하위 규정으로 명확히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의견

- 해당 개정 조례안은 관람료 및 대관료 무료화를 통해 군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다만, 앞서 지적한 세부 조문의 법적·행정적 미비점에 대해서 객관적 행위 기준 중심의 세부 집행지침 수립, 대관 심사 기준의 하위규정 구체화 등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발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②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가.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 무형 유산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 및 군민 대상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 위탁 추진에 필요한 거창군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 나. 위 치: 거창읍 수남로 2193-34
- 다. 주요시설

구분	전수교육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문화집회시설 (창고)	야외공연장
	지하 1	지상 1					
1,224.47㎡	141.6㎡	679.5㎡	57.6㎡	40.5㎡	32.4㎡	173.16㎡	119.71㎡

라. 위탁대상 사무

- 1)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
- 2) 무형유산의 교육, 회원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3) 전수교육관 시설물 및 비품관리 위탁, 사용료 관리
- 4)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위탁기간: 2026. 12. 19. ~ 2029. 12. 18.(3년)

바. 위탁방법: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류 및 면접 심사)

아. 소요예산: 금163,580천원(2026년 기준) / 연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3)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4)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5)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나. 향후계획

- 1) 2026. 9.: 모집공고 및 접수
- 2) 2026. 9. ~ 10.: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3) 2026. 11.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다. 위탁운영 계획: 붙임

라. 소요예산(2026년): 103,202천원(국 21,658, 도 6,497, 군 75,047)

※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마. 위탁운영계획: 따로붙임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해당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창 전수교육관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으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함.

나. 주요 검토사항

- 공개모집 방식임에도 관련 전문 단체의 폭이 좁아 특정 주체의 장기 수탁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자율성 저하와 실질적 경쟁 부재가 우려됨.
- 현 수탁단체의 전문성과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형유산의 미래지향적 전승과 청년 전승자 육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단체 내부의 자율적인 관리 기준 정립 등 행정적 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2026년 민간위탁금 163,580천원 중 약 75%에 해당하는 123,387천원이 대부분 인건비에 집중되어 있어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관리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과 후속 정산 검사가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및 조치 요구사항

-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전승과 무형유산 보유자의 안정적인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계획

- ❖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기간 만료(2026. 12. 18.)에 따라 거창전수교육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I 법적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 「거창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II 위탁시설현황

- 시설명: 경상남도 무형유산 거창전수교육관(개관 2011년)
- 위치: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93-34
- 주요시설

합계	전수교육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문화집회시설 (창고)	야외공연장
	지하 1	지상 1					
1,224.47㎡	141.6㎡	679.5㎡	57.6㎡	40.5㎡	32.4㎡	173.16㎡	119.71㎡

III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6. 12. 19. ~ 2029. 12. 18.(3년)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기준: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서류 및 면접 심사)

○ 연간 지원 예산('26년 예산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인건비	관리비	비고
민간위탁금	163,580	123,387	40,193	

※ 인건비, 관리비 등 변동이 있을 시 증감 가능함.

○ 신청자격

-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관내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 위탁대상 사무범위

-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업무
- 무형유산의 교육, 회원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교육관 시설물 및 비품관리 위탁, 사용료 관리
- 무형유산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선정기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선정

IV 향후 추진계획

○ 모집공고: 2026. 9월 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6. 9. ~ 10.

○ 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2026. 11월 중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6.12.31. 만료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농촌인력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 탁 명: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농업근로자 기숙사 1층)
- 다. 위탁사무
 - 1)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농업인력 근태 및 인력 배치 관리
 - 2) 농업인력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3)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4)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사업

5)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라.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예산은 매년 편성(2026년 예산 150백만원)
마. 위탁방법: 공개모집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150백만원(2026년 기준), <국도비 교부액에 따라 변동>

4.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및 운영방향

- 1) 농촌인력중개센터 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지원체계 구축, 예산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근로자 이송 차량을 보유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출·퇴근 체계 구축
 - 관내·관외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인력을 활용해 농
작업 적기에 인력 알선
- 2) 전문 운영기관의 현장 중심 운영으로 농업인의 만족도 향상
및 행정업무 부담 경감
 - 농가와 근로자 간 상시 상담 및 현장 대응 강화
 - 인력 관리 전문성을 활용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 3) 신규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대상 현장실습교육을 확대
하여 작업 적응력 및 안전의식 향상
- 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보험지원으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나. 관계법령

- 1)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 7조, 8조, 17조
- 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조
- 3)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13조

다. 향후계획

- 1)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2026. 9.
- 2)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기관 선정: 2026. 10. ~ 11.
- 3) 위·수탁 협약체결: 2026. 12.
- 4)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2027.1.1.부터 3년간

라.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해당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임.
-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기존 인력중개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연계·통합 관리하여 인력 수급의 현장 대응력과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위탁 근거의 적정성, 사업 수행의 필요성, 수탁자 선정 및 예산 반영 구조 등 행정절차 전반이 법적 요건을 충족함.

나. 종합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거창군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공공 농업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로, 법적·절차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탁기관 모집 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연계에 따른 거창군과 수탁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협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조, 6조, 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4조
-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 13조

II 위탁개요

- 시 설 명 :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농업근로자 기숙사 1층)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3년간
- 사 업 비 : 2026년 기준 150백만원(국 45, 도 13.5, 군 91.5)
- 수탁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위탁사무
 -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관리
 - ▶ 권역별 노선 지정으로 출·퇴근 차량 운행
 - ▶ 현장실습교육 가능한 농가에서 농작업 교육 진행
 -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보험료, 안전용품 등 지원 사업
 - 그 밖에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주요내용
 - 위·수탁 협약 체결 시 보증을 위한 공증 시행
 - 위탁사업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 사업 추진 결과 및 지출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실시

- 반기별 운영실적 보고 및 지도·점검 실시
- 연1회 사업성과 평가를 통한 운영 개선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일정

내용	민간위탁계획 및 적정성 검토	군의회 동의안제출	모집공고 및 접수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위·수탁 협약체결
시기	2026. 8월	2026. 8월	2026. 9월	2026. 10월~11월	2026. 12월

III 운영방향

구 분	내 용
농작업자 출퇴근 운송	• 농가 권역별 차량운행 노선을 설정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자 통합 출·퇴근 시스템 마련
농번기 인력수급	• 관내·관외 농작업자와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을 활용해 효율적인 일손 공급 • 수확, 제초 등 단순작업이 가능한 농작물 대상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 매칭
농작업 교육	• 현장실습교육이 가능한 농가를 지정 후 공공형 계절근로자까지 교육대상으로 포함하여 교육 시행
안전관리	• 농작업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안전용품 지원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운영관리	• 농업인력 수급현황 관리와 농가 수요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인력지원

⇒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 공공형 계절근로 통합 관리

IV 운영실적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3길 36(농업근로자 기숙사 1층)
- 위탁기관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 이사장 변동규
-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현황(2013년 설립)

합계(명)	농가	농작업자	현물출자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455	184	264	5	1	1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2026.12.31. 수탁기간 만료 예정**
- ※ 2014 ~ 2026년 : 거창군 상시고용사회적협동조합 위탁운영
- 운영실적 현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매년 1만 명 이상의 농작업 알선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과 연계 출퇴근 수송차량 운행

연도	농작업 알선실적 참여인원(명)			출퇴근 차량운행						사업비 (백만원)
				계		관내		관외		
	계	관내	관외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운행 횟수	수송 인원	
2014	9,288	8,859	429	164	1,652	164	1,652	-	-	91
2015	10,023	9,844	179	220	2,146	220	2,146	-	-	107
2016	10,974	9,974	1,000	238	2,662	218	2,162	20	500	121
2017	11,013	9,822	1,191	305	3,491	284	2,840	21	651	141
2018	10,128	9,358	770	240	2,700	225	2,250	15	450	150
2019	10,968	10,206	762	205	2,232	191	1,910	14	322	150
2020	10,540	9,870	670	172	1,930	158	1,580	14	350	150
2021	10,035	10,035	-	178	1,780	178	1,780	-	-	150
2022	10,593	10,013	580	215	2,280	170	1,700	45	580	150
2023	10,320	9,980	340	217	2,270	193	1,930	24	340	150
2024	10,388	10,388	-	714	5,908	225	2,250	489	3,658	150
2025	10,540	10,540	-	1,077	9,637	245	2,450	832	7,187	150
2026. 6.	7,530	7,530	-	620	5,638	129	1,290	491	4,348	150

○ 사무실 전경



건물전경



거창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사무실

V

양우계익

- 2026. 8.: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95회 정례회 중)
- 2026. 9.: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10. ~ 1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선정
- 2026. 12.: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VI

기대효과

-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적기 공급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
-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 전문 운영기관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농가 만족도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농업고용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2조(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2.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4. 농촌인력의 관리·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농업 고용서비스 표준안 개발 및 보급
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지원
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운영
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① 군수는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2. 농촌인력난 해소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국외 출장 시 필요한 비용
- ② 군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2.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산업재해 및 상해 보험료
- 나.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
3. 내국인 고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나. 중개센터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이용할 경우 식비

③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에 드는 비용
3. 감염병 방역 및 격리 비용, 의료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6. 8.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6. 8. 18.

2.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1) 시 설 명: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2) 위 치: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월성청소년수련원 내)
3) 시설개요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3,901.43㎡		지상2층 / 898,12㎡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9동 / 386.02㎡
근무인원	9명		5명		3명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9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우주인관, 안내데스크, 휴게실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2층	우주탐험관, 교육체험실	
	3층	직원숙소	옥상	천체관측관	

나.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일까지(3년간)

다. 위탁사무 및 조건

구 분	위탁사무 및 조건	비 고
거창월성 청소년수련원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시설의 개·보수 중 거창군에서 심사·결정한 사항 지원 • 운영비는 위·수탁자 협의로 예산범위 내 지원	
거창월성 우주창의과학관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거창국민여가 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 운영비 지원(시설운영,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람료 징수,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징수

라. 수탁자 자격사항

- 수탁자격: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시설명	구분	지원자격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실적 필요

마. 선정방법: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나. 향후계획

- 2026. 9.: 제295회 정례회 의안 상정
- 2026. 10.: 공개모집 공고
- 2026. 11.: 수탁자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선정: 관련공무원, 군의원, 교사,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
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9명 등)
- 2026. 12.: 수탁자 선정 발표
- 2026. 12.: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다.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및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해당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창군 청소년활동 시설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임.
- 법령상 사전 동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청소년 전문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민간위탁의 기본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

〈참조〉 검토의견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사항

- 2026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에 294,000천원, 수련원 분전반 교체, 캠핑장 노후데크 교체, 과학관 체험시설 보수공사 등에 121,5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이에, 운영비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 '일상 유지보수비'와 군에서 직접 부담하는 '대수선(개·보수) 비용'의 기준(금액 한계선 등)을 위·수탁 협약서에 명확히 하여 경미한 시설 보수는 수탁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요구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동의안은 청소년 전문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됨.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수련원, 과학관, 캠핑장) 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위탁 계획입니다.

I 위탁현황

1 위탁개요

- 시설 명: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 위 치: 북상면 덕유월성로 1312-96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수탁자: (사)거창흥사단

2 시설현황

구분	월성청소년수련원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국민여가캠핑장
개원일	2001. 5. 20.	2014. 3. 22.	2014. 6. 20.
규모 / 면적	지하1층, 지상3층 / 3,901.43㎡	지상2층 / 898.12㎡	캐빈하우스 4동, 방갈로 3동, 데크 19동 / 386.02㎡
주요 시설	지하	식당,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	
	1층	사무실, 강의실(2곳), 숙소10실, 준비실, 원장실	1층
	2층	강당, 강의실, 숙소(8실)	우주인관, 안내데스크, 휴게실
	3층	전시실	우주탐험관, 교육체험실
		옥상	천체관측관
			캐빈하우스(복층) 4동, 방갈로(단층) 3동, 야영데크 19동, 취사장 1동, 화장실 1동

3 지원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월성청소년수련원	-	-	-	2023년 정상화 이후로 지원금 없음
월성우주창의과학관	282,000	290,000	294,000	운영비 지원
	51,871	43,972	24,238	관람료 징수
국민여가캠핑장	7,707	8,551	-	사용료 징수 (매년 12월 징수)

II 위탁 추진 계획

1 추진방향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단체 공개모집
- 수탁단체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수탁단체 선정
- 수탁기관 변경 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위탁조건

구 분	위탁조건	비 고
거창월성 청소년수련원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시설의 개·보수 중 거창군에서 심사·결정한 사항 지원	
거창월성 우주창의과학관	• 건물·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무상사용 • 위탁금을 지급하고 관람료 등 수익금은 거창군 수입 처리	
거창국민여가 캠핑장	•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 수입 • 캠핑장 사용료는 거창군에 납부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운영비 지원(시설운영, 유지보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 월성우주창의과학관 관람료 징수,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 징수

○ 수탁자 자격사항

시설명	구 분	지원자격	비 고
수련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 실적 필요	
캠핑장	청소년이용시설	운영 실적 필요	

< 청소년단체 >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 출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동 시행령 제2조, 성평등가족부고시 제2025-1호

3] 적격자 선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및 선정: 6 ~ 9명(관련 공무원, 군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심사기준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 기관의 운영기반 • 사업수행 실적	
시설에 대한 이해	• 수탁의 목적과 취지 • 중장기 발전 전략	
시설운영계획	• 사업운영계획, 시설경영계획, 지역협력계획	

- 선정결과: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서면으로 개별통보

4] 향후계획

- 의회동의: 2026. 9. 9. 까지
- 공개모집: 2026. 9. 14. ~ 10. 02.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2026. 10. 6. ~ 10. 12.
- 선정심의회 개최 및 수탁자 발표: 2026. 10. 13. ~ 10. 23.
- 위탁계약 체결 및 공증: 2026. 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022.11.30.)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2022.11.3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제8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군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19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